

공약사업 관리카드(2024. 3. 10. 기준)

관리번호	2-4	공 약 사업명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주체	창녕군	완료시기	임기내	공약 이행도					
총사업비	10,086백만 원 (국 5,232, 도 1,350, 군 3,504)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내용: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 확대 ○ 사업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생 								
연 도 별 소요예산 (백만 원)	구 분	총 액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0,086	1,681	1,681	1,681	1,681	1,681	1,681	
	국 비	5,232	872	872	872	872	872	872	
	도 비	1,350	225	225	225	225	225	225	
	군 비	3,504	584	584	584	584	584	584	
민자 등	-	-	-	-	-	-	-	-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7개소 운영 ○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운영 ○ 방과 후 아카데미 2개소 운영 ○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1개소 및 야간연장보육 1개소 운영 ○ 365일 꺼지지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1개소 운영 								
공 약 이행률	95%	2024년 목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아동수 증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돌봄기관 간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 ○ 신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자 확충 								
주관부서 (팀 명)	노인여성아동과 (아동청소년팀)	부서장	석혜경 (☎1400)	팀 장	장인석 (☎1422)	담당자	박혜경 (☎1423)		

증빙서류

창녕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시행 2023. 6. 29.]

(제정) 2021. 10. 21 조례 제2645호
(일부개정) 2023. 06. 29 조례 제2759호

관리책임부서 : 창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연락처 : 055-530-1422-1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 돌봄 시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9.>

1. "돌봄 아동"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
4.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관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초·돌봄 서비스의 제공

「창녕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